

이 투자설명서는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I-3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I-3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I-3호

2. 자산운용회사명: PCA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02-2126-3500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 경남은행 (055-290-8000)
- 광주은행 (1588-3388),
- 대신증권 (1588-4488)
- 브릿지증권 (1566-0900)
- 우리투자증권 (1544-0000)
- 하나은행 (1588-1111)
- 한국외환은행 (1544-3000)
- 한국투자증권(1588-0012)
- 한불종합금융(주) (02-777-7711)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1588-1771)
- SK증권(1588-8245)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회사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6년 9월 8일

5.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 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요약

이 투자설명서 요약은 본 투자설명서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각 부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본 투자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Ⅰ.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칭 |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1-3호 |
| 2. 신탁계약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 3. 종류 | 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 4. 자산운용회사 | PCA투자신탁운용(주) |

Ⅱ.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및 해외의 여러 간접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단, 국내 및 해외 간접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 관련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 국내 및 해외 간접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향후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분산투자
 - 4 개 국가에 대한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라 국가별 자산배분 전략을 결정하고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 영국 PCA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별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하며 투자대상 펀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을 실시
-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시장위험, 환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유가증권가격평가위험, 투명성위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의 여러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5단계의 투자위험 등급^{주)} 가운데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제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투자실적 추이

해당사항 없음

.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종류별 수익증권 판매대상

- A 수익증권: 제한 없음
- C 수익증권: 제한 없음
- I 수익증권: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기금 또는 기관투자가

나. 종류별 수익증권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가. 종류 A 수익증권: 없음 나. 종류 C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 다. 종류 I 수익증권: 없음	수익증권 매수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1.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90 일 이상: 없음	
	합 계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57%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가.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33% 나.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0.80% 다. 종류 I: 순자산총액의 연 0.25%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5%	
	총 보수·비용 비율	가.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97% 나.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1.44% 다. 종류 I: 순자산총액의 연 0.89%	-
	총 보수·비용 비율 ¹⁾ (피투자펀드 보수 ²⁾ 포함)	가.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2.47% 나.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1.94% 다. 종류 I: 순자산총액의 연 1.39%	-

주 1)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이하 “피투자펀드”)에 징구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2) 피투자펀드 보수는 투자대상인 피투자펀드의 보수를 기초로 한 예상보수율이며 이 보수율은 실제 투자시 투자대상 펀드의 변경이나 투자비용 변경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6. 9. 8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기구 및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국내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국내상장주식 및 동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상장주식 또는 동 주식관련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이 비과세 되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 및 해외간접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만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매입>

<매입방법>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납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설정시는 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환매>

<환매방법>

환매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10 영업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하며, 수익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11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수수료>

1.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 일 이상: 없음

.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칭 |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I-3호 |
| 2. 신탁계약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 3. 종류 | 재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 4. 자산운용회사 | PCA투자신탁운용(주) |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해당사항 없음 |
| 6. 수탁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
|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정보

- | | |
|------------|--|
|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및 해외의 여러 간접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단, 국내 및 해외 간접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 관련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2. 주요 투자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간접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향후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분산투자 - 4 개 국가에 대한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라 국가별 자산배분 전략을 결정하고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영국 PCA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별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하며 투자대상 펀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을 실시 |

<세부 운용전략>

- PCA투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PCA그룹의 아시아지역 주식운용 본부인 PAM Hong Kong에서 국가별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정기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행
 - 국가별 자산배분전략과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국 PCA그룹 계열 자산운용사 (PAM Hong Kong, PAM Singapore, PCA Asset Japan, PruICICI, M&G 및 PCA투신운용 등)에서 운용하는 해외 및 국내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국가별 자산배분 비중의 원활한 조절을 위해 ETF 투자 병행
 - 외화표시 해외펀드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펀드 내에서 환헤지(Hedge)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 축소
 - 투자대상인 간접투자기구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환헤지 전략을 운용 (단, 간접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자산의 통화는 상이할 수 있음)
- ※ 일반적으로 재간접투자기구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해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보수를 감안할 경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 1-3 호의 경우 PCA 그룹 계열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시장위험, 환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유가증권가격평가위험, 투명성위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의 여러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5단계의 투자위험 등급^{주)} 가운데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제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 나.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수료 및 보수

가. 종류별 수익증권 판매대상

- A 수익증권: 제한없음
- C 수익증권: 제한없음
- I 수익증권: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기금 또는 기관투자자

나. 종류별 수익증권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가. 종류 A 수익증권: 없음 나. 종류 C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 다. 종류 I 수익증권: 없음	수익증권 매수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1.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90 일 이상: 없음	
	합 계	-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구 분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57%	최초 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가.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33% 나.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0.80% 다. 종류 I: 순자산총액의 연 0.25%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5%	-
	총 보수·비용 비율	가.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97% 나.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1.44% 다. 종류 I: 순자산총액의 연 0.89%	
	총 보수·비용 비율 ¹⁾ (간접투자기구 보수 ²⁾ 포함)	가.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2.47% 나.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1.94% 다. 종류 I: 순자산총액의 연 1.39%	

주 1)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이하 “피투자펀드”)에 징구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2) 피투자펀드 보수는 투자대상인 피투자펀드의 보수를 기초로 한 예상보수율이며 이 보수율은 실제 투자시 투자대상 펀드의 변경이나 투자비용 변경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종류 A 수익증권	253	779	1,368	3,151
종류 C 수익증권	299	712	1,175	2,575
종류 I 수익증권	142	438	770	1,773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투자시점부터 해당기간까지의 누적 비용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6. 9. 4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기구 및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 하는 국내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국내상장주식 및 동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상장 주식 또는 동 주식관련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이 비과세 되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 및 해외간접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만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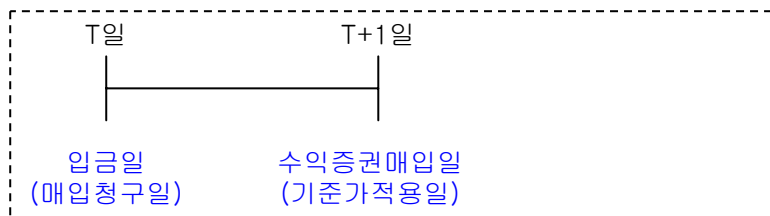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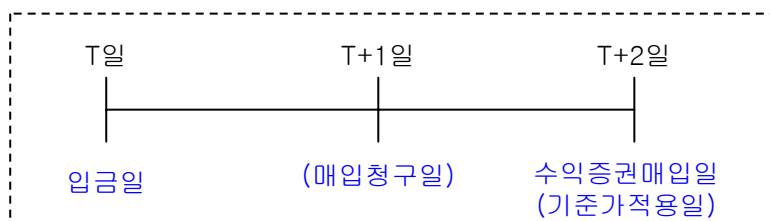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주 1)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 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 합니다.

(3) 다만, 최초 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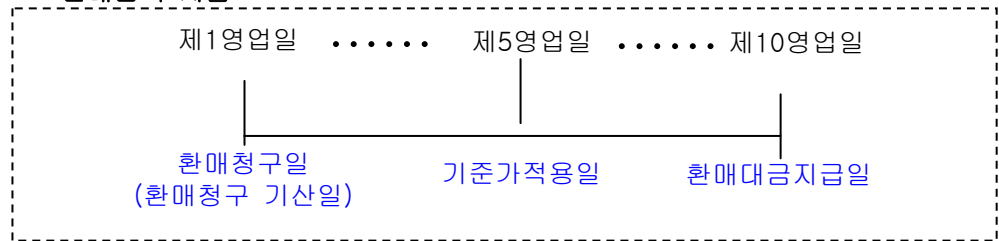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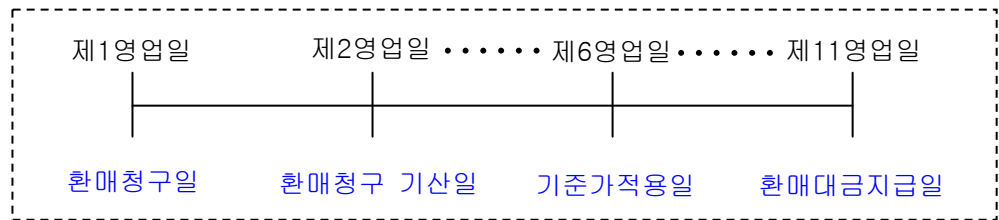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오후 5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8 영업일 전부터(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9 영업일 전부터)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 국내 및 해외 간접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향후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분산투자
- 4 개 국가에 대한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라 국가별 자산배분 전략을 결정하고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영국 PCA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별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하며 투자대상 펀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을 실시

<세부 운용전략>

- PCA투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PCA그룹의 아시아지역 주식운용 본부인 PAM Hong Kong에서 국가별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정기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행
- 국가별 자산배분전략과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국 PCA그룹 계열 자산운용사 (PAM Hong Kong, PAM Singapore, PCA Asset Japan, PruICICI, M&G 및 PCA투신운용 등)에서 운용하는 해외 및 국내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국가별 자산배분 비중의 원활한 조절을 위해 ETF 투자 병행
- 외화표시 해외펀드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펀드 내에서 환헤지(Hedge)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 축소
- 투자대상 간접투자기구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환헤지 전략을 운용 (단, 간접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자산의 통화는 상이할 수 있음)

<편입대상 간접투자기구 내역>

(2006년 8월 30일 기준)

펀드명	투자 대상지역	펀드 통화	운용사 / 하위운용사	규모 (억원)	최초설정일
PCA업종일등 주식D-1 클래스 F	한국	한국 원화	PCA투신운용	3,158	2002년 4월
PCA베스트그로스 주식A-1 클래스 F	한국	한국 원화	PCA투신운용	1,841	2001년 2월
PCA베스트그로스 주식 I-4	한국	한국 원화	PCA투신운용	3,048	2004년 1월
PruICICI Power Fund	인도	인도 루피	PruICICI	2,893	1994년 10월
PruICICI Discovery Fund	인도	인도 루피	PruICICI	1,959	2004년 8월
Dragon & Peacock Fund	중국 및 인도	싱가포르 달러	PAM Singapore / PAM Hong Kong	4,764	2004년 5월
IOF Greater China Fund	중국	미국 달러	PAM Singapore / PAM Hong Kong	506	2004년 11월

HSBC Chinese Equity 클래스 I	중국	미국 달러	HSBC Asset Management HK	31,764	1992년 6월
SGAM Fund Equities China	중국	미국 달러	SG Asset Management Singapore	1,520	1996년 6월
M&G Japan Fund	일본	영국 파운드	PAM Singapore / PAM Hong Kong	1,937	1971년 1월
M&G Japan Smaller Companies Fund	일본	영국 파운드	PAM Singapore / PAM Hong Kong	1,300	1984년 4월
IOF Japan Equity Fund	일본	미국 달러	PAM Singapore / PAM Hong Kong	1,573	2006년 1월
I shares MSCI Japan Index	일본	영국 파운드	Barclays	16,969	1996년 3월

※ 상기의 편입예정 대상 간접투자기구들은 시장상황 및 성과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간접투자기구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감안할 경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 1-3 호의 경우 PCA 그룹 계열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2. 투자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간접투자기구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국내 및 해외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주식 등의 신용도, 재무상태 및 개별기업의 고유위험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외화표시 해외수익증권에 투자하며 투자대상 간접투자기구들의 표시통화와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대상자산의 표시통화가 상이할 수 있어 두 단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용사에서는 간접투자기구들의 표시통화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의 위험을 축소 시키면서 간접투자기구의 수익률이 동 투자신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투자신탁이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개방형 투자 신탁이고 간접투자기구의 표시통화에 대한 직접적인 환헤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간접투자기구와 피투자자산간의 통화가 상이할 수 있는 관계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환헤지는 불가능하며 수익자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등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환금성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가격평가 위험	일부 외국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펀드의 수익증권 등은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당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계산하여 통보하는 경우 평가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된 수익증권 등의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가격통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통보지연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당일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가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및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및 부도 등과 같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등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이 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나, 그 세부내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 충분히 알 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수익증권등	50% 이상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외국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
②	채권	5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을 제외)
③	주식	3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④	주식·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을 말함
⑤	유동성자산	4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차(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선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간접투자증권	-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른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총 발행 간접투자증권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파생상품 투자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동일 회사 주식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계열회사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p>	
후순위채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도초과	<p>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p>	

·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전자공시
공시장소	판매사 각 영업지점 및 운용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중개회사 선정을 위하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및 컴플라이언스팀이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선정 및 가중치 결정
- 평가자는 사전에 정해진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각 중개회사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적용
- 각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개회사를 결정한 후 운용 및 컴플라이언스 임원의 승인을 거쳐 거래 시행
- 중개회사 평가기준의 선정 및 조정은 분기별로 실시
- 투자자산별 평가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개회사의 평가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아이디어 제공 2. 자료제공, 세미나 리서치 능력 3. 투자 및 조사 지원, 기업탐방 등 ■ 채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미나 및 제공된 투자정보의 질 2. 관련시장정보의 경쟁력 3. 중개팀의 강약점 4. 분석 방법론 5. 매매체결력 6. 매매주문시 문제해결력 7. 매매에 대한 지원부서의 능력 8. 정기세미나 및 리서치인력의 보유 9. 정기 리서치 자료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리서치 보고서 2. 트레이딩 실행 3. 재무건전성 등 ■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채권거래의 기준과 같음

.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15층 연락처: 02-2126-3500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주) 상기의 영국 프루덴셜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 자산 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들을 통하여 지난 15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 (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 위탁>

1. 일반사무관리회사

-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수익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는 사모펀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회계처리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2001년 2월 5일부터 “회계처리 대행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계약”을 통하여HSBC

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본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HSBC펀드서비스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문회사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투자자문 기관(이하 “외국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을 투자자문회사로 선정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투자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업무 및 투자신탁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권고하고 외국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다고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 선정한 외국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합니다.

※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의 책임은 위탁한 자에게 있습니다.

3. 최근 2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단위 : 백만원	
	2006.03	2005.03		2006.03	2005.03
자산총계	20,318	14,694	1. 영업수익	12,635	5,696
1. 유동자산	15,340	9,279	2. 영업비용	8,614	6,551
2. 고정자산	4,978	5,415	3. 영업이익	4,021	-855
투자자산	4,330	4,345	4. 영업외수익	1	112
유형자산	452	564	5. 영업외비용	6	7
무형자산	56	95	6. 경상이익	4,015	-750
이연자산	140	411	7. 특별이익	0	0
부채 및 자본총계	20,318	14,694	8. 특별손실	0	0
1. 유동부채	3,351	1,059	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015	-750
2. 고정부채	492	16	10. 법인세비용	1,159	-411
3. 부채총계	3,843	1,075	11. 당기순이익	2,856	-339
4. 자본금	15,000	15,000			
5. 이익잉여금	1,475	-1,381			
6. 자본총계	16,475	13,619			

4. 운용자산 규모
(일임자산 포함)

(2006. 7. 31 기준, 단위: 억좌)

				MMF			
	21,010	6,852	10,696	9,052	6,722	8,953	63,28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주요 경력
박건엽	38	고려대 통계학과 졸업 KAIST 박사과정 졸업 PCA 투신운용 A.I 팀 팀장 (04.4~현재)

<운용전문인력의 기타운용 현황>

(2006. 7. 31 기준)

성명	운용 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억원)
박건엽	공동	31	20,080
계	공동	31	20,080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경남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연락처: 055-290-8000
회사연혁	1970.09.23 동양증권 설립 1983.10.23 대우증권으로 사명 변경 1983.12.22 삼보증권 흡수 합병 1999.10.01 대우그룹에서 계열분리 2000.05.16 한국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2004.12.24 환경 선정 '제 14 회 다산금융상' 증권부문 최고상 금상 수상 2005.01.10 제7회 매경 증권인상 대상 수상

- 광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1층 연락처: 1588-3388
회사연혁	1968.09.17 창립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2001.03.27 우리금융지주(주) 자회사 편입 2002.09.03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록 2003.01.01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주식회사와 IT아웃소싱

- 대신증권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연락처: 1588-4488
회사연혁	1962.07.27 설립

- 브릿지증권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5층 연락처 : 1566-0900
회사연혁	2005.09 골든브릿지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2.01 일은증권(주) 합병후 브릿지증권(주)로 상호 변경 1996.04 증권유통금융업무 개시 1993.02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인가 1991.08 기업인수 및 합병(M&A)주선업무 겸업 인가 1998.09 유가증권시장 상장 1954.08 대유증권(주)설립

- 우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연락처: 1544-0000
회사연혁	1969.01.16 우리투자증권 설립

-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연락처: 1588-1111
회사연혁	1959.12.01 설립 1999.07.20 판매회사 등록

- 한국외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연락처: 1544-3000
회사연혁	1969. 설립

- 한국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연락처: 1588-0012
회사연혁	1968. 12 한신증권 설립(舊 동원증권) 1974. 7 국내최초 투자신탁전업회사로 설립인가(舊 한투증권) 1977. 4 신탁형증권저축업무 개시 (舊 한투증권) 1988. 1 증권업 허가(舊 동원증권) 1996. 12 기업공개 (舊 동원증권) 1989. 8 상임대리인 업무 인가 1991. 8 기업인수 및 합병 주식업무 인가 1996. 12 동원증권으로 상호변경 1999. 1 증권투자회사 판매회사 등록(舊 한투증권) 2000. 6 종합증권사로 전환(한국투자신탁증권) 2005. 6 한국투자증권 출범

- 한불종합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연락처: 02- 777-7711
회사연혁	1977.07.13 설립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연락처: 1588-1599
회사연혁	1981. 부산지점 개설 1984. 서울지점 개설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89. 자본 확충 1997. 자본 확충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지점 개설 200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 지점 개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연락처: 1588-8245
회사연혁	1955.07.30 설립 1989 05 ·01 런던사무소 개설 2000 10 ·24 미국 아메리트레이드사와 L O I 체결 2001 12 ·27 전자장외 중개시장(ECN) 업무개시 2004 05 ·27 투자일임업무 인가 2005 05 ·23 은행-증권 통합 M-Stock서비스 개시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와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 홈페이지 주소>

판매사	홈페이지 주소
광주은행	www.kjbank.com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대신증권	www.daishin.co.kr
브릿지증권	www.bridgefn.com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하나은행	www.hanabank.com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한국투자증권	www.truefriend.com
한불종합금융(주)	www.sogeko.com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www.kr.hsbc.com
SK 증권	www.webtrade.co.kr

.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연락처: 02-2004-0123
회사연혁	1981. 부산지점 개설 1984. 서울지점 개설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89. 자본 확충 1997. 자본 확충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지점 개설 200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 지점 개설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 ①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와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HSBC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6층 연락처: 02-3771-9800
회사연혁	2000.03.23 설립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당해 투자신탁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 인출, 계약해지, 순자산가치의 산정, 순자산가치의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보 및 관련 회계처리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 외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무
- 간접투자자산의 계산업무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02-739-3590
회사 연혁	2000. 06. 20 설립	2000. 05. 29 설립	2000. 06. 16 설립
	2000. 06. 29 등록	2000. 07. 01 등록	2000. 06. 29 등록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 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명부>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해야 합니다
- ② 증권예탁원은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수익자 명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 나.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 다.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 ③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위의 가 와 나 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가나 다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소집절차>

-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시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시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사항 확인>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 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 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